

중국 회사법 중 경영진 관련 규정의 개정과 시사점

July 19, 2024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안(이하 “개정 <회사법>”)이 2023. 12. 29.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하여 2024.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하 “기존 <회사법>”)에 비해, 개정 <회사법>은 회사의 동사(한국의 이사에 해당함), 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이하 통칭하여 “경영진”)의 의무 및 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향후 경영진의 직무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 <회사법> 중 경영진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주요 개정사항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개정사항

(1) 충실의무 및 근면의무의 조항 구체화 및 지배주주, 실제지배권자¹의 충실의무 및 근면의무 규정 추가

기존 <회사법>	개정 <회사법>
제147조 제1항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은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 정관을 준수해야 하고,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와 근면의무를 부담한다.	제180조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은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u>조치를 취해 자신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상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직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된다.</u>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은 회사에 대해 근면의무를 부담하고, <u>직무 수행에 있어 회사의 최대 이익을 위해 관리자가 통상적으로 가져야 하는 합리적인 주의를 다해야 한다.</u> <u>회사의 지배주주, 실제지배권자가 회사의 동사를 말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회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술한 두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u>

¹ 지배주주라 함은 출자액이 자본금 총액의 50%를 초과하거나 그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지만 의결권이 주주회 결의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주를 의미하고, 실제지배권자라 함은 투자관계, 계약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하여 회사 행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함.

기존 <회사법>에서는 경영진이 충실의무 및 근면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그 의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 회사와 경영진 간에 충실의무 또는 근면의무 위반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중국 법원에서 충실의무 및 근면의무에 대해 해석하고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개정 <회사법>에서는 충실의무 및 근면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기존 <회사법>에서는 동사, 감사 또는 고급관리인원이 아닌 지배주주, 실제지배권자에 대한 충실의무 및 근면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 <회사법>에서는 회사의 동사를 맡지는 않았으나 실제로는 회사 직무를 수행하는 지배주주, 실제지배권자도 충실의무 및 근면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경제실 부주임 왕상(王翔)이 편집을 주관한 서적인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주해>(이하 “<회사법 주해>”)에 의하면, 지배주주, 실제지배권자의 충실의무 및 근면의무를 규정한 것은, 일부 지배주주, 실제지배권자들이 형식적으로는 동사직을 맡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동사의 직권을 행사하면서, 동사의 책임 또는 동사 취임 자격에 대한 법률상 제한조건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 7. 1.부터 시행된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시간 효력에 관한 일부 규정>>(이하 “<회사법 시간효력 관련 사법해석>”)에 의하면, 개정 <회사법>이 시행되기 전(2024. 7. 1. 전)에 형식적으로는 동사직을 맡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회사 직무를 수행한 지배주주, 실제지배권자의 민사책임과 관련하여는, 개정 <회사법> 제180조(상기 표 참고)가 적용됩니다.² 즉, 기존 <회사법>에서 지배주주, 실제지배권자의 충실의무와 근면의무를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 7. 1. 전 지배주주, 실제지배권자가 실질적으로 동사의 직권을 행사한 경우, 2024. 7. 1. 후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개정 <회사법> 제180조 규정에 따라 지배주주 또는 실제지배권자가 충실의무 또는 근면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지배주주, 실제지배권자는 개정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시간 효력에 관한 일부 규정>>

제4조 회사법 시행 전의 법률사실로 야기된 민사분쟁사건에서, 당시의 법률, 사법해석에 규정이 없으나 회사법에서 규정한 아래 상황들은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4)회사 동사 직을 맡지 않은 지배주주, 실제지배권자가 회사 사무를 수행하는 민사책임에 대한 인정은 회사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동사, 고급관리인원의 금지의무 개정 및 감사의 금지의무 추가

기존 <회사법>	개정 <회사법>
제148조 동사, 고급관리인원은 아래 행위를 행해서는 아니된다. (1) 회사의 자금을 유용 (2) 회사의 자금을 개인 명의 또는 기타 개인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예치 (3) <u>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주회, 주주총회³ 또는 동사회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의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해 주거나 회사의 재산으로 타인을 위해 담보를 제공</u> (4) <u>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주주회, 주주총회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진행</u> (※ 개정 <회사법>에서는 자기거래에 관한 내용을 제182조에서 별도로 규정하였음) (5) <u>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무의 편의를 이용해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 회사에 귀속되는 사업기회를 유용하고, 자체적으로 또는 타인을 위해 재직 중인 회사와 동일 유형의 업무를 경영</u> (※ 개정 <회사법>에서는 사업기회 유용, 동업경쟁에 관한 내용을 제183조, 184조에서 각각 별도로 규정하였음) (6) 타인과 회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커미션을 수수하여 자신의 소유로 함. (7) 사사로이 회사의 비밀을 공개 (8)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 동사, 고급관리인원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취득한 수입은 회사의 소유로 한다.	제181조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은 아래 행위를 행해서는 아니된다. (1)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회사 자금을 유용 (2) 회사의 자금을 개인 명의 또는 기타 개인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예치 (3) 직권을 이용해 뇌물을 받거나 기타 불법 수입을 수수 (※ 기존 <회사법>의 기타 조항의 내용을 개정 <회사법>에서 본 조로 옮긴 내용임) (4) 타인과 회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커미션을 수수하여 자신의 소유로 함. (5) 사사로이 회사의 비밀을 공개 (6)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

개정 <회사법>에서는 자기거래, 사업기회 유용, 동업경쟁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조항으로 조정하고, 법에서 규정한 절차(아래 제(3), (4), (5)항 참고 바람)를 거칠 경우 허용되도록 하였습니다. <회사법 주해>에 의하면, 상기 개정 <회사법> 제181조에서 나열한 행위들은 그 성격상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들인 반면, 자기거래, 사업기회 유용, 동업경쟁 행위는 경우에 따라 일정 정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정된 절차를 거치면 허용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존 <회사법> 제148조 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경영진의 부적절한 회사자금 대여, 담보 제공에 관한 내용이 개정 <회사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법, 회사 정관 등에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 여전히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이러한 행위를 행해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여전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기존 <회사법>상 주식유한회사의 경우 “주주총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주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개정 <회사법>에서는 “주주총회”라는 용어를 삭제하였고, 주식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를 불문하고 모두 “주주회”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있음.

참고로, 개정 <회사법>에서는 기존 <회사법> 중 동사와 고급관리인원이 부담하던 (i) 회사 자금 유용 등 금지성 행위(상기 표 참고), (ii) 자기거래 및 특수관계자 거래(아래 (3)항 참고), (iii) 사업기회 유용(아래 (4)항 참고) 및 (iv) 경업금지 관련 의무의 주체에 감사도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회사법 시간효력 관련 사법해석에 의하면, 개정 <회사법>이 시행되기 전(2024. 7. 1. 전)에 감사가 전술한 행위들을 행한 경우에도 개정 <회사법>의 관련 규정{본 (2)항 및 아래 (3)항, (4)항, (5)항 참고}이 적용됩니다.⁴ 즉, 기존 <회사법>에서 감사의 상기 의무들을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 7. 1. 전 감사가 상기 행위들을 행한 경우, 2024. 7. 1. 후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감사는 개정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자기거래 및 특수관계자 거래 제한 확대

기존 <회사법>	개정 <회사법>
제148조 제4호 동사, 고급관리인원은 아래 행위를 행해서는 아니된다. (4)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주주회, 주주총회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진행.	제182조 동사, <u>감사</u>, 고급관리인원이 <u>직접 또는 간접적으로</u>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u>계약 체결 또는 거래 진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동사회 또는 주주회에 보고해야 하고</u>,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u>동사회 또는 주주회의 결의를 통과해야 한다</u>. <u>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의 친족(近亲属)⁵,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또는 그의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업 및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과 기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u>

기존 <회사법>에서는 자기거래 제한 대상에 동사, 고급관리인원만 포함시켰으나, 개정 <회사법>에서는 (i) 제한 대상에 감사를 추가하고 (ii) 경영진의 친족, 경영진 또는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기업, 경영진과 기타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자기거래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회사법>에 의하면, 회사 정관에서 허용하거나 주주회, 주주총회의 동의를 거칠 경우 자기거래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개정 <회사법>에서는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먼저 동사회 또는 주주회에 보고한 후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동사회 또는 주주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다 엄격해졌습니다. <회사법 주해>에 따르면 동사회 또는 주주회에 보고 안건에는 진행하려는 거래의 주체, 목적물, 수량, 품질, 가격, 기타 이익 상충 상황 및 거래의 공정성 등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최고인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시간 효력에 관한 일부 규정>

제5조 회사법 시행 전의 법률사실로 야기된 민사분쟁사건에서, 당시의 법률, 사법해석에 이미 원칙적인 규정이 있고, 회사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한 아래 상황들은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회사 감사가 회사자금 유용 등 금지성 행위, 위법 특수관계자 거래, 회사 사업기회 부당 유용, 제한받는 동 유형 업무 경영에 관한 배상책임에 대한 인정은 각기 회사법 181조, 182조 제1항, 제183조, 제18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개정 <회사법>에 “친족”(近亲属)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 <민법전> 제1045조에 의하면 친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친손, 외손을 포함하는 바, 이를 준용할 것으로 보임.

(4)사업기회 유용 관련 조항 개정

기존 <회사법>	개정 <회사법>
제148조 제1항 제5호 동사, 고급관리인원은 아래 행위를 행해서는 아니된다. (5)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무의 편의를 이용해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 회사에 귀속되는 사업기회를 유용하거나, 자체적으로 또는 타인을 위해 재직 중인 회사와 동일 유형의 업무를 경영.	제183조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은 직무의 편의를 이용해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아래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동사회 또는 주주회에 보고하고,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동사회 또는 주주회 결의를 통과한 경우 (2)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정관의 규정에 의해,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기존 <회사법>에서는 사업기회 유용의 제한 대상에 동사, 고급관리인원만 포함시켰으나, 개정 <회사법>에서는 제한 대상에 감사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개정 <회사법>에서는 주주회 뿐만 아니라 동사회에도 사업기회 유용 행위에 대한 승인권을 부여하였으며, 법 기타 회사 정관 등에 의해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경영진의 사업기회 유용이 허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회사법 시간효력 관련 사법해석에 의하면, 개정 <회사법>이 시행되기 전(2024. 7. 1. 전) 동사, 고급관리인원의 사업기회 유용 행위에 관한 배상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 <회사법> 제183조(상기 표 참고)가 적용됩니다.⁶ 개정 <회사법>의 사업기회 유용 관련 조항에서는 금지 예외사항을 추가하였는 바, 2024. 7. 1. 전의 동사 및/또는 고급관리인원의 사업기회 유용 행위가 개정 <회사법>의 금지 예외사항에 해당할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법 시행 초기이고 선례가 없으므로 추후 실무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회사법 시간효력 관련 사법해석에 의하면, 개정 <회사법>이 시행되기 전(2024. 7. 1. 전) 감사의 사업기회유용 행위 관한 배상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 <회사법> 제183조(상기 표 참고)가 적용됩니다.

⁶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시간 효력에 관한 일부 규정>

제5조 회사법 시행 전의 법률사실로 야기된 민사분쟁사건에서, 당시의 법률, 사법해석에 이미 원칙적인 규정이 있고, 회사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한 아래 상황들은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3)동사, 고급관리인원의 회사 사업기회 부당 유용, 제한받는 동 유형 업무 경영에 관한 배상책임에 대한 인정은 각기 회사법 제183조, 제18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경업금지 관련 조항 개정

기존 <회사법>	개정 <회사법>
제148조 제1항 제5호 동사, 고급관리인원은 아래 행위를 행해서는 아니된다. (5)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무의 편의를 이용해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 회사에 귀속되는 사업기회를 유용하거나, 자체적으로 또는 타인을 위해 재직 중인 회사와 <u>동일 유형의 업무를 경영.</u>	제184조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은 <u>동사회 또는 주주회에 보고 및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동사회 또는 주주회 결의에 통과하지 아니하고</u>, 자체적으로 또는 타인을 위해 그가 재직중인 회사와 동일 유형의 업무를 경영해서는 아니된다.

기존 <회사법>에서는 경업금지의무 대상에 동사, 고급관리인원만 포함시켰으나, 개정 <회사법>에서는 감사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개정 <회사법>에서는 주주회뿐만 아니라 동사회에도 경업행위에 대한 승인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법 시간효력 관련 사법해석에 의하면, 개정 <회사법>이 시행되기 전(2024. 7. 1. 전) 동사, 고급관리인원의 경업금지 행위 관한 배상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 <회사법> 제184조(상기 표 참고)가 적용됩니다. 한편, 개정 <회사법>의 경업금지 관련 조항에서는 금지 예외사항을 추가하였는 바, 2024. 7. 1. 전의 동사 및/또는 고급관리인원의 동일 유형 업무 경영 행위가 개정 <회사법>의 금지 예외사항(동사회 또는 주주회에 보고 및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동사회 또는 주주회 결의에 통과)에 해당할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법 시행 초기이고 선례가 없으므로 추후 실무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회사법 시간효력 관련 사법해석에 의하면, 개정 <회사법>이 시행되기 전(2024. 7. 1. 전) 감사의 경업금지 행위 관한 배상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 <회사법> 제184조(상기 표 참고)가 적용됩니다.

(6) 이해관계인인 동사의 의결권 배제 규정 추가

기존 <회사법>	개정 <회사법>
/	제185조 <u>동사회가 본 법 제182조 내지 제184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결의할 시, 관련 동사는 의결에 참여해서는 아니되며, 그의 의결권은 의결권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사회 회의에 출석하는 관계가 없는 동사의 인수가 3인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주주회에 상정해 심의해야 한다.</u>

상기 제(3), (4), (5)항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개정 <회사법>에서는 경영진의 자기거래, 회사 사업기회 유용 및 경영행위에 대한 승인권을 주주회 외에 동사회에도 부여하였습니다.

동사회 결의의 공정성을 위해, 개정 <회사법>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관여되는 당사들의 의결권을 제한하였고, 기타 당사들(관여되지 않은 당사들)의 수가 3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주회에 상정해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7) 경영진의 자본충실 관련 책임 규정

기존 <회사법>에서는 주주의 자본충실 관련 책임만 규정하였으나, 개정 <회사법>에서는 (i) 불법 이익배당, (ii) 불법 감자 시 경영진의 손해배상책임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유한책임회사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iii) 주주의 출자에 대한 동사회의 독촉 의무 및 동사의 손해배상책임, (iv) 출자 도피⁷ 발생 시 경영진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회사법 시간효력 관련 사법해석에 의하면, 개정 <회사법>이 시행되기 전(2024. 7. 1. 전)에 회사가 법규정을 위반하고 주주에 대한 (i) 불법 이익배당, (ii) 불법 감자를 실시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여 손해배상책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개정 <회사법> 제211조(아래 “가.항” 참고) 및 제226조(아래 “나.항” 참고)가 적용됩니다.⁸ 즉, 기존 <회사법>에서 (i) 이익배당, (ii) 불법 감자와 관련하여 경영진의 책임을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 7. 1. 전에 전술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2024. 7. 1. 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영진은 개정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 불법 이익배당 시 경영진의 책임

기존 <회사법>	개정 <회사법>
제166조 제5항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동사회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 손실 보전, 법정준비금 적립 전에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한 경우, 주주는 규정을 위반하고 배당 받은 이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제211조 회사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 주주는 규정을 위반하고 배당 받은 이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고,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주주 및 책임이 있는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⁷ “출자 도피”(抽逃出資)란, 주주가 자본금을 납부한 후 부당한 방식으로 출자금을 다시 회수하면서도, 기존에 납부한 자본금에 상응하는 주주 지위를 보유하는 경우를 의미함.

⁸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시간 효력에 관한 일부 규정>>

제1조 회사법 시행 후의 법률사실로 야기된 민사분쟁사건은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법 시행 전의 법률사실로 야기된 민사분쟁사건은 당시의 법률, 사법해석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당시 법률, 사법해석의 규정을 적용하되, 회사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입법목적에 더 부합하는 경우,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5)회사법 시행 전, 회사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등록자본금 감소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여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기 회사법 제211조, 제22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불법 감자 시 경영진의 책임

기존 <회사법>	개정 <회사법>
/	제226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등록자본금을 감소한 경우, 주주는 그가 수령한 자금을 반환해야 하고, 주주의 출자를 감면한 경우 원상 복구해야 한다. <u>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주주 및 책임이 있는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u>

다. 주주 출자에 대한 동사회의 독촉의무 및 동사의 책임(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

기존 사법해석 취지	개정 <회사법>
최고인민법원의 <중국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의 일부 문제에 관한 규정(3){이하 “<u>회사법 사법해석(3)</u>”} 제13조 증자 시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 충실의무 및 근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동사 및 고급관리인은 관련 책임 부담 후 출자의무를 미 이행한 주주에게 구상 가능함.	제51조 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된 후, 동사회는 주주의 출자상황에 대해 확인을 진행해야 하고, 주주가 기한 내에 회사 정관에 규정된 출자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해당 주주에게 서면 납입 독촉장을 발송하여 납입을 독촉해야 한다. 적시에 전항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u>책임이 있는 동사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u>

라. 출자 도피 발생 시 경영진의 책임(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

기존 <회사법>/사법해석 취지	개정 <회사법>
제35조 회사가 설립된 후, 주주는 출자 도피를 해서는 아니된다. 최고인민법원의 <중국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의 일부 문제에 관한 규정(3) 제14조 경영진이 출자 도피 행위에 협조한 경우 관련 주주와 연대책임을 부담함.	제53조 회사가 설립된 후, 주주는 출자 도피를 해서는 아니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주주는 도피시킨 출자금을 반환해야 하고,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u>책임이 있는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은 해당 주주와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u>

(8) 직무수행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책임

기존 <회사법>	개정 <회사법>
/	제191조 동사, 고급관리인원이 직무를 수행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동사, 고급관리인원도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9) 회사 청산 관련 책임

기존 <회사법>	개정 <회사법>
제183조 회사가 본 법 제180조⁹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규정으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청산팀을 성립하여 청산을 개시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되고, 주식유한회사의 청산팀은 동사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된다.	제232조 회사가 본 법 제229조 제1항¹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규정으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 청산해야 한다. 회사 청산의무자는 동사이고,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을 진행해야 한다. 청산팀은 동사로 구성된다, 단, 회사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주주회에서 결의하여 타인을 별도 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청산의무자가 적시에 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 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9 기존 <회사법> 제180조

- (1)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2)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는 경우
- (3) 회사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여야 하는 경우
- (4) 법에 의하여 영업집조를 취소당하거나 폐업 명령을 받거나 또는 취소당하는 경우
- (5) 인민법원이 본 법 제182조 규정에 따라 해산시키는 경우

10 개정 <회사법> 제229조

- (1)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2) 주주회에서 해산을 결의하는 경우
- (3) 회사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여야 하는 경우
- (4) 법에 의하여 영업집조를 취소당하거나 폐업 명령을 받거나 또는 취소당하는 경우
- (5) 인민법원이 본 법 제231조 규정에 따라 해산시키는 경우

기존 <회사법>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의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되고, 주식유한회사의 청산팀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개정 <회사법>에서는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유한회사의 청산팀을 모두 동사로 구성하도록 개정하였고(회사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주주회에서 기타 인원을 선임하는 경우는 제외), 동사가 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 또는 채권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10) 동사 책임보험 가입 관련 조항 추가

기존 <회사법>	개정 <회사법>
/	제193조 회사는 동사의 재직 기간에 동사가 회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인해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회사가 동사를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동사회는 주주회에 책임보험의 보험가입금액, 보장범위 및 보험료 등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 중국에서는 주로 상장회사가 그 경영진들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이러한 책임보험 가입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개정 <회사법>에서는 동사의 의무 및 책임이 대폭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동사의 리스크 헷지 차원에서 책임보험 관련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 <회사법>에서 감사, 고급관리인원의 책임보험 가입을 특별히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보험상품이 있을 경우 회사는 감사, 고급관리인원을 위하여도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중국 현지법인 경영진에 대한 시사점

중국의 기존 <회사법> 및 그에 따른 사법해석 등을 살펴보면, 과거 중국은 회사의 경영진, 특히 비상장회사의 경영진의 직무 수행에 대해 엄격하게 규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의 경영책임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비상장회사의 경우 중대한 사안은 주주회에서 결정을 하고, 일상적인 업무는 동사장(한국의 이사회 의장에 해당함), 집행동사(동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단일 동사를 말함), 경리 등 아주 소수의 경영진이 도맡아 처리하여 왔기 때문에 전술한 소수의 경영진을 제외한 기타 동사나 동사회는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 <회사법>에서 경영진은 물론 지배주주와 실제지배권자의 의무 및 책임도 대폭 강화함에 따라 향후에는 중국에서도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및 지배주주와 실제지배권자의 경영책임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 현지법인의 동사, 감사 또는 고급관리인원을 담당하게 될 분들 및 전술한 직책은 담당하지 않지만 지배주주나 실제지배권자로서 실질적으로 회사 직무를 수행하게 될 분들은 향후 컴플라이언스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중국 현지법인 차원에서도 정관 및 기타 내부 규칙상의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개정 <회사법>에 부합하도록 검토 및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i) 우선 개정 <회사법> 등 중국 법규정상 경영진의 의무 및 책임 관련 조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중국 현지법인의 정관 및 기타 내부 규칙에 반영하며, (ii) 규정된 경영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iii)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국 법규정, 회사 정관 및 기타 내부 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필요 시 사내 변호사나 외부 변호사를 통하여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에 대하여 미리 검토를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경영진의 배상책임보험(구체적인 사항은 보험회사에 문의 필요)을 통해 직무 수행상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개정 <회사법> 중 경영진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일부 사항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바(예컨대, 동사, 감사 등 직책에 따른 내부 책임배분 문제 등), 개정 <회사법> 시행 이후의 추가 유권해석, 실무 추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원중재 | 변호사 T. 86-10-8447-5343 E. jjwon@shinkim.com
- 원상호 | 변호사 T. 02-316-7961 E. shweon@shinkim.com
- 장대훈 | 외국변호사 T. 86-10-8447-5343 E. dxzhang@shinkim.com
- 황효민 | 외국변호사 T. 86-10-8447-5514 E. xmhua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